

# 담배소매점 내부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 차단을 위한 조치방법 등 안내

## 담배광고의 원칙적 금지 · 예외적 허용

- ◆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1호, 담배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관련이 됩니다.
- ◆ 담배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
- ◆ 담배소매점의 내부에서만 담배 광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고, 이 때 외부에 담배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담배 광고물을 전시 · 부착하여야 합니다. 이 때, 조명을 이용한 광고물, 고정형 시설물 등 모든 담배광고물이 대상이 됩니다.

### ○ 위반 지속 시 이후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

- ◆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(광고를 한 자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, 제33조(양벌규정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◆ 담배사업법 제11조의4(제조업자,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), 제15조(수입판매업자·도매업자, 1년 이내 영업정지) 제17조(소매인, 1년 이내의 영업정지), 제27조의2(광고를 한 자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, 제27조의3(광고물 제거 등 시정명령 조치 이행하지 아니한 자, 500만원 이하 벌금), 제32조(양벌규정,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동일)

##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 차단 조치방법 안내

### 문의처

※ 담배 제조·수입사 등은 자율규제 시정 조치를 '21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. 지역별 순차적으로 시정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관련 협회 및 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☎ 한국담배협회  
(제조·수입사)  
02-3789-9607

☎ KT&G 080-931-0399

☎ BAT코리아(주) 02-2112-7100

☎ JTI코리아(주) 02-732-5711

☎ 한국필립모리스(주) 02-3707-0700

☎ 한국편의점산업협회  
(편의점 가맹본사)  
02-565-1348

☎ CU 1577-3663

☎ GS25 080-555-2525

☎ MINI STOP 1577-9621

☎ 7-ELEVEN 1577-0711

☎ SPACE24 02-590-8062

※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속하지 않는 가맹본사의 경우 해당 가맹본사로 연락(예 : 이마트24, 365플러스, 스토리웨이)

☎ emart24 02-6916-1652

☎ 365 PLUS 영업FC 별도 문의

☎ StoryWay 070-7092-7854

☎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02-365-1784

☎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02-303-4456

☎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010-8421-7466

### 조치 방법 사례(뒷면 참조)

※ 기존에 담배광고물이 없거나 담배광고물을 전부 제거한 경우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

## 조치 방법 사례

※ 조치 방법은 예시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 
기준에 담배광고물이 없거나 담배광고물을 전부 제거한 경우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

### ① 편광필름 부착



편광필름을 부착한 후에도 소매점 정면·측면에서 담배광고가 외부 노출된다면 추가 차단조치 또는 다른 조치 방법 고려

### ② 반투명 시트지 부착



반투명 시트지 투과도 및 보행로 기준 청소년과 성인의 키를 고려하여 담배광고가 외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

### ③ 가림막 설치 또는 담배광고물 재배치



계산대 주변의 담배광고 문구 등이 외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

### ④ 타 제품 광고물 부착



계절형 포스터, 현수막 등 가변형 차단조치 활용 자제